
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무직근로자들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파견근로자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·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2호).
-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들의 고용, 임금 등 근로조건,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공무직위원회는 상시·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(안 제4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다만,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(기획단)¹⁾와 관련하여, 「행정기관 소

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²⁾에 따른 경우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, 다만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기구가 필요한 경우, 법률에는 지원기구의 운영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(기구의 규모, 부서의 직급 등)은 추후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
(전문위원 이 세 진)

-
- 1)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 제10조(기획단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, 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②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위원회의 사무기구 등)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(常勤)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(위원회의 사무기구 등)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(이하 “자문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,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.